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정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주 요 내 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제2회추경)	기 정 (제1회 추경)	증 감	%	비 고
계	416,708	383,442	33,266	8.7	
일반회계	288,872	259,990	28,882	11.1	
특별회계	127,836 (84,354)	123,452 (81,990)	4,384 (2,364)	3.6	

※ ()내 금액은 공기업회계 연.

※ 재정자립도 : 70.7% (당초 70.0, 1회추경 67.8)

나. 예산총칙

- .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32,354	9,970
일 반 회 계	288,872	8,666
특 별 회 계	43,482	1,304

※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제외

○. 일반회계 예비비는 2,630백만원.

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

- (1) 일반회계 : 배부해 드린 “예산(안)” 참고.
- (2) 특별회계 : “ ”

2.주요사업조서 :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참고

검 토 의 견

○. 회계별 주요내용 분석

◇ 일반회계

·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 288억82백만원중(11.1%),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26.7% 증가한,
272억5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0.3%증가한,
1억77백만원으로,
세입재원중 자체세입이 95%이며
잔여액은 의존수입인
국·도비, 지방교부세등으로 편성.

자체세입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274억35백만원으로

이중 249억90백만원이 법인세할 주민세 수입이며,
자체세입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음.

그 외 자동차세와 사업소세가 31억원 증가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19억원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한 교통세액 증가분이,
7월1일 이후로 연기됨에 감소 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추경재원 288억82백만원중,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49억14백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 및 자체사업에 247억42백만원을 증액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서 7억7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 세입예산의 경우
 - 주택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16억3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8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억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15억50백만원, 자본수익 3억15백만원,
보전재원 4억9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3억6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의 경우

- 일반특별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인 경상예산에 8억31백만원,
보조 및 자체사업에 22억78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10억8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7백만원, 물건비 1억87백만원,
자본지출 17억3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종합 의견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전국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
경상비 비율을 21.3%로 유지, 노력토록하고 있으나,
참고로 2000년도 우리시의 결산결과 35.3%로써,
(전국 248개단체 평균 35.8%) 정부가 계획한,
비율과는 많은차이가 있음.
- 한편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금번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12개 세항에,

38억원을 절감하여 타용도로 예산편성 하였음은,
좋은 사례라 할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외에는 검토 되어야 겠음.

- 대형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제4항에의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확보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각종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것임.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안(97쪽)에서,
체육진흥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기정예산이 당초 및 추경예산액포함 8억5백만원이나,
금번 추경에서 8억10백만원을 감하고,
추가사업비를 제한 금액 7억4천7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음.
- 앞으로 사업비예산 계상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등을 면밀히 검토후,
적정의 사업비만 계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필요예산을 전출시,

그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후 필요액만 전출토록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하나,
검토없이 요구액 전액을 전출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이 요구됨.
예로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8억99백만원의 전출 받으면서,
예비비에 5억7천3백만원을 증가한 사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시설비등(75쪽)에서 일부 사업은,
당초 및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전액 또는 일부삭감 하였음,

앞으로 현지답사, 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후,
꼭필요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임.

- 기타사항으로, 예산 부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하였을때 성과, 사업현장 방문등으로,
평가·심사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